

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자유시민대학」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힘을 키우고 나아가 품격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학, 시민학, 인문학,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걸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,
- 나.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의 '20년 9월 준공을 앞두고 동남권 지역(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)의 시민들에게도 시민적 요구, 시대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- 다.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「서울자유시민대학」을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(신규) 계약을 체결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〈추진근거〉

- 평생교육법 제20조(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
-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(사업) 및 같은 조례 제29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3호

〈추진 필요성〉

- 기부채납 받은 舊 강동구 서울승합부지의 동남권 캠퍼스가 준공함에 따라 동남권 지역의 시민들에게 시민대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함
-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운영 중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
- 시민대학 활성화 포럼 및 전시·행사 기획 운영
- 자기주도 학습 지원·상담·관리 및 열린 공간 조성
- 교육과정 정보 제공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
- 평생학습 기관·단체 협력 및 공유사무실 운영·지원
- 동남권 캠퍼스 시설 관리·운영, 보안·안전 관련 제반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강동구 고덕로 397
- 시설규모 : 연면적 11,812㎡(지하5층, 지상2층 ~ 지상4층)
- 시설용도 :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
- 위치도



지역여건	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5분 아파트 밀집지역(36개 단지, 약 33,700세대)
------	---

마. 민간위탁 기간 : 1년(2020. 1. 1. ~ 2020. 12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협약(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사업비('20년) : 1,167백만원(자산취득비 1,245백만원 불포함)

[사업 예산 (안)]

예산항목	예산액(천원)	산 출 내 역
총 계	1,166,345	
인 건 비	354,18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본급 (12명) : 210,4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팀장(1명) : 4,200천원×1명×8월=33,600천원 ▶ 팀장(1명) : 4,200천원×1명×4월=16,800천원 ▶ 대리(3명) : 3,200천원×3명×8월=76,800천원 ▶ 대리(1명) : 3,200천원×1명×4월=12,800천원 ▶ 주임(2명) : 2,200천원×2명×8월=35,200천원 ▶ 주임(4명) : 2,200천원×4명×4월=35,200천원 ◦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: 143,785천원
사 업 비	319,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육과정 운영비 : 139,3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규 강좌(55개) : 420천원×5회×55강좌= 115,500천원 ▶ 명사 특강(10개) : 660천원×1회×10강좌= 6,600천원 ▶ 이슈릴레이특강(15개) : 540천원×1회×15강좌=8,100천원 ▶ 문화콘서트(5개) : 2,700천원 ▶ 자문단 운영(4회) : 6,400천원 ◦ 강의교재 인쇄 및 소모품비 : 62,6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교재 인쇄비 : 51,600천원 ▶ 소모품비 : 11,000천원 ◦ 행사 및 홍보비 : 117,6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관행사 및 포럼 개최 등 : 64,000천원 ▶ 홍보비(포스터 제작, 프로그램북 제작) : 53,600천원
운 영 비	492,6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관리 유지비 : 472,540천원 ◦ 공공요금 및 제세 : 7,500천원 ◦ 운영경비 : 12,620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19.7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<input type="checkbox"/> 평생교육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0조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-

□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

- 제18조(사업)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2.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- 제29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
-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력TF팀 최경진 (☎ 2133-3992)